

의안번호	제 114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37 회)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월 1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→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
-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(안 제3조)
 -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던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”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”
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지방보조
금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-----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2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
3. 채권관리 현황
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 - 가. 교부현황
 - 나. 성과평가 결과
 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 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

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는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로 본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의2(통합공시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,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